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2011.12.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기능직 10급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3조(정원책정기준) [별표 2] 의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10급을 삭제
-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에서 총계를 1,274명에서 1,283명으로, 일반직계를 1,019명에서 1,028명으로,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60명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10급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중 기능10급을 삭제하고
- 안 제4조 [별표 3]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1,274명에서 1,283명으로, 일반직계를 1,019명에서 1,028명으로,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60명으로 변경함.
- 이 개정 조례안은 관제부처 합동 「사회복지인력TF」를 구성하여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정책으로, 2011. 9. 30일 통보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순증분 9명 확충이 결정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표를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제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함으로서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5 호
----------	--------

제출연월일 : 2011.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기능직 10급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정원책정기준) [별표 2] 의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10급을 삭제
나.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에서 총계를 1,274명에서 1,283명으로, 일반직계를 1,019명에서 1,028명으로,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60명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1. 9. 30일)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준비율	1%이내	7%이내	21%이내	31%이내	29%이내	11%이상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기능직

구 분	6급	7급	8급	9급
기준비율	5%이내	20%이내	56%이내	19%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정직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기준비율	0%	38%이내	38%이내	24%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등
총계	1,283	1,283			
정무직	1	1			
일반직계	1,028	1,028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0	29	2	11	18
6급이하	960	960			
별정직계	11	11			
기능직계	243	243			

☐ 조례 제4조 [별표 3] 변경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274	1,274				총계	1,283	1,283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019	1,019				일반직계	1,028	1,028			
3급	1	1	-	-	-	3급	1	1	-	-	-
4급	7	5	1	1	-	4급	7	5	1	1	-
5급	60	29	2	11	18	5급	60	29	2	11	18
6급이하	951	951				6급이하	960	960			
별정직계	11	11				별정직계	11	11			
기능직계	243	243				기능직계	243	243			